

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인복지에  
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4 월 18 일

여 수 시 장

1861호



여수시 조례 제1861호

붙임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보건·복지”를 “보건·복지·교육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사회·경제·건강·여가”를 “사회·경제·교육·건강·여가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노인교육”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, 건강관리, 여가 및 문화,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,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, 성인문자해독,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9. “노인교육시설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기관,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복지 및 고령사회”를 “보건복지·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노인보건복지”를 “노인보건복지·교육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회·문화”를 “사회·문화 등 여가”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노인교육 교재 개발
3.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
4.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의 제목 “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”을 “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정책연구)”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노인정책센터 설치·운영)”을 “(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노인복지와 고령사회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·개발하고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‘노인정책센터’”를 “노인복지·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‘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’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4.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문자해독,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### <신 설>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· ② (생략)

### <신 설>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시장은 중앙행정기관(보건복지부)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 및 고

9. “노인교육시설” 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.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관련 기관,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-----  
-----  
----- 보건복지·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노인보건복지·교육 -

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  
한 사항

제8조(사회·문화 활동의 장려)  
시장은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 
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  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 
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7조(노인학대 예방) 시장은 노  
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  
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 
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  
한 교육 및 홍보
2. 학대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 및 사후관리
3.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노  
인 보호에 따른 지원
4.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  
력 양성
5. 노인학대 피해노인의 일시보  
호시설 지정
6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(생

-----  
-  
제8조(사회·문화 활동의 장려) -  
----- 사회·문화 등 여가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

제22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 (현

략)

<신 설>

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2. 노인교육 교재 개발

3.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

4.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

(생 략)

제26조(노인정책센터 설치·운영)

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와 고령 사회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·개발하고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‘노인정책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7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

제24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

및 정책연구)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) --

----- 노인복지·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‘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’ -----.

제27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38조(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노인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 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38조(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 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--	--